

서울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'96. 9. 12.
시민보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6. 9. 9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'96. 9. 10.

다. 상정일자 : 제40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('96. 9. 12.)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제안설명자 : 강수경 의약과장

가. 제안이유

구강보건과 치면열구전색(충치) 진료는 비보험대상이나 보건소를 통한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하여 “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”에 의거 마포구수가조례를 정하여 대구민 구강보건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수수료징수항목에 구강보건진료인 “치면열구전색진료비”를 신설함.(안 제2조제2항 관련, 별표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김건재 전문위원)

○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2항에 “6. 구강보건진료”규정을 신설하고 별표 수수료액표중 “6. 구강보건진료”란을 신설함과 동시에 진료금액은 “의료보험법 제29조제3항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중 보건조 치과진료비 1회 방문당 총진료비”로 하고자 하는 것임.

○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료써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구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혜적인 사업인 바, 향후 불우아동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의 아동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질의요지(이용원 위원) : “치면열구전색”이란 용어의 뜻은?

○답변요지(김영호 보건소장) : 치아와 치아

사이의 틈에 음식찌꺼기가 끼어 충치를 유발하므로 이 틈에 물질을 넣어 메꾸주는 것임.

○질의요지(김동휘 위원) : 병치료가 아닌데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?

○답변요지(김영호 보건소장) : 질병예방사업이므로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칙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의 지시가 있었음. 진료비를 보험청구액까지 환자에게 부담시켜 3,000원을 받음. 충치가 생긴 사람은 치료효과가 없고 초등학교 1·2학년생 정도가 해당됨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0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9. 9.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○구강보건과 치면열구전색(충치)진료는 비보험대상이나 보건소를 통한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하여 [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]에 이견 마포구수가조례를 정하여 대구민 구강보건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수수료징수항목에 구강보건진료인 “치면열구전색진료비”를 신설함.(안 제2조제2항 관련, 별표)

3. 개정근거

○의료보험법(1995. 8. 4. 법률 제4728호) 제29조

○지역보건법(1995. 12. 29. 법률 제5101호)제14조

4. 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조치필요성 : 필요

첨부 : 1)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
2)신·구조문대비표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

한다.

6. 구강보건진료

<별표> 수수료액표 중 “5. 환자에 관한 의료기록 사본교부”란 다음에 “6. 구강보건진료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종 류	단 위	금 액	비 교
6. 구강보건 진료	치면열구전색 진료비	1회	의료보험법제29조제3항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보 험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중 보건소 치과진료비 1회 방문당 총 진료비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조(수수료 및 진료비) ①(생략) ②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. 1.~5.(생략) <신설> ③(생략)</p> <p><별표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수료액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종류</th> <th>단위</th> <th>금액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~5. (생략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신설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종류	단위	금액	비고	1.~5. (생략)					<신설>					<p>제2조(수수료 및 진료비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1.~5.(현행과 같음) 6. 구강 보건진료 ③(현행과 같음)</p> <p><별표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수료액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종류</th> <th>단위</th> <th>금액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~5 (현행과 같음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. 구강 보건진료</td> <td>치면 열구 전색 진료비</td> <td>1회</td> <td></td> <td>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중 보건소치과 진료비 1회 방문당 총 진료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종류	단위	금액	비고	1~5 (현행과 같음)					6. 구강 보건진료	치면 열구 전색 진료비	1회		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중 보건소치과 진료비 1회 방문당 총 진료비
구분	종류	단위	금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~5. 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신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종류	단위	금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
1~5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. 구강 보건진료	치면 열구 전색 진료비	1회		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중 보건소치과 진료비 1회 방문당 총 진료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